

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1999년 6월 일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고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의 범위를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을 6급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98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이 제한세율로 변경되고 소액부징수의 범위가 2,000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의 1,000원의 세액은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고 소액부징수의 범위안에 있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세액의 현실화를 위하여 5,000원으로 인상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관련하여 기재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직권으로 조사·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행정규제 완화측면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의 위촉자격을 지방세관련 5급이상에서 지방세관련 6급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안제8조제2항)
- 나.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현실에 맞게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제20조제1항제1호가목)
- 다. 건축물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이 관련법규와 중복되거나 사문화된 것을 행정규제완화측면에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고자 함.(안제32조제2호)
- 라. 종합토지세 관련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재산세규정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제79조제7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필함
- 라.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을 "지방세관련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중 "1,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제32조중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79조제7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생략)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u>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u>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5.(생략) ③~⑥(생략)</p> <p>제20조(세율) ①(생략)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u>1,000원</u> 나. (생략) 2.(생략) ②(생략)</p> <p>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생략) 1. <u>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u> 2. <u>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3.(생략) 4. <u>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u> 5. <u>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u> 6.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p> <p>제79조(신고의무) ①~⑥(생략) ⑦(생략) 1.(생략) 2. <u>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u> 3. <u>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p>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u>지방세관련 6급이상의 공무원</u>..... 1.~5.(현행과 같음) ③~⑥(현행과 같음)</p> <p>제20조(세율) ①(현행과 같음)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u>5,000원</u> 나. (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현행과 같음) <u><삭제></u> 2. <u>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3.(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p> <p>제79조(신고의무) ①~⑥(현행과 같음) ⑦(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p>

균등할주민세 원가분석

(단위: 원,전)

	구 분	원가산출내역	원가액
	총 계		3,838.29
원가항목비	인 건 비	부과 $1,090,885 \div 30 \text{일} \div 480 \text{분} \times 12 \text{분}$ 징수 $1,090,885 \div 30 \text{일} \div 480 \text{분} \times 10 \text{분}$	1,666.63
	여 비	$10,000 \div 480 \times 32 \text{분}$	666.66
	인쇄제본비	용지+토너+드럼 $50 + 12 + 5$	67.00
	발 송 비	우편료 1,170+ 반송료 234(20%반송)	1,404.00
	소모품비 (대사리스트)	136칼럼지+토너+드럼 $7+5+2$	14.00
	장비손료	지방세전산장비손료 20	20.00

도내 자치단체 행정수혜 비교표

(단위: %)

항목 시·군	상수도 보급율	적령아동 취학율	주택 보급율	쓰레기 수거율	도로 포장율	대학수	종합 병원수
춘천시	83.0	96.7	82.2	100.0	80.1	3	2
원주시	80.3	98.2	85.6	100.0	82.7	6	2
강릉시	85.8	96.6	89.0	100.0	72.9	4	4
동해시	93.0	97.2	87.6	100.0	34.6	1	1
태백시	97.1	97.7	120.3	100.0	66.4	1	1
속초시	98.2	96.0	91.6	100.0	76.5	1	1
삼척시	74.1	96.8	110.1	100.0	63.8	1	1
홍천군	53.6	96.2	83.2	100.0	74.6		1
횡성군	38.1	97.9	96.4	100.0	71.0		
영월군	67.1	98.8	107.5	100.0	66.2	1	1
평창군	48.4	98.4	89.9	100.0	69.3		
정선군	73.2	94.3	135.7	100.0	52.2		
철원군	65.3	100.0	90.2	100.0	50.9		1
화천군	43.5	98.5	94.9	100.0	59.6		
양구군	52.7	98.7	93.5	100.0	65.7		
인제군	68.0	98.5	92.6	100.0	69.1		
고성군	76.3	97.9	93.1	100.0	40.8		
양양군	62.4	97.0	93.4	100.0	59.9		

표본항목 대비 자치단체 행정수혜 계수

지 수 시·군	표본항목 지수합산	합 계
춘천시	0.830+0.967+0.822+1.0+0.801+0.9+0.6	5.920
원주시	0.803+0.982+0.856+1.0+0.827+1.8+0.6	6.868
강릉시	0.858+0.966+0.890+1.0+0.729+1.2+1.2	6.843
동해시	0.930+0.972+0.876+1.0+0.346+0.3+0.3	5.724
태백시	0.971+0.977+1.203+1.0+0.664+0.3+0.3	5.415
속초시	0.982+0.960+0.916+1.0+0.765+0.3+0.3	5.223
삼척시	0.741+0.968+1.101+1.0+0.638+0.3+0.3	5.048
홍천군	0.536+0.962+0.832+1.0+0.746	4.076
횡성군	0.381+0.979+0.964+1.0+0.710	4.034
영월군	0.671+0.988+1.075+1.0+0.662+0.3+0.3	4.996
평창군	0.484+0.984+0.899+1.0+0.693	4.060
정선군	0.732+0.943+1.357+1.0+0.522	4.554
철원군	0.653+1.0+0.902+1.0+0.509+0.3	4.364
화천군	0.435+0.985+0.949+1.0+0.596	3.965
양구군	0.527+0.987+0.935+1.0+0.657	4.106
인제군	0.680+0.985+0.926+1.0+0.691	4.282
고성군	0.763+0.979+0.931+1.0+0.408	4.081
양양군	0.624+0.970+0.934+1.0+0.599	4.127

다른시군의 주민세개정 추진상황

99. 6. 22현재

시군별	조정세액	추진상황	비고
춘천	시:3,600 군: 2,000	6. 4 의회심의, 6. 26 공포예정	
원주	시: 3,600 군: 2,000	입법예고(6. 15- 7. 5)	
강릉	시: 3,600 군: 2,000	6. 29 의회심의예정	
동해	4,000	6. 22 의회심의	
태백	5,000	5. 17 공포	
속초	4,000	5. 28 공포	
삼척	시: 3,600 군: 2,000	입법예고(6. 21- 7. 11)	
홍천	5,000	7. 5 의회심의예정	
횡성	5,000	6. 3 의회심의, 곧 공포	
영월	5,000	3. 18 의회심의	유보중
평창			
정선	5,000	6. 2 공포	
철원	5,000	4. 10 공포	
화천	5,000	입법예고(5. 10- 5. 29)	
양구	5,000	6. 24 의회 심의예정, 6월말 공포	
인제	5,000	7월 의회심의예정	
고성	5,000	6. 30 의회 심의예정	
양양	5,000	입법예고(5. 28- 6. 16)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① 納稅者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課稅가 適法한지의 여부에 관한 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제179조(소액부징수)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법 제70조의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통지"라 함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제36조의 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법 제70조의 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건축법

- 제29조(건축물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 제7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변경) ①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8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법

제17조(분할신청) ①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지목변경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소유권등의 득실변경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절차) ①토지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등록한다.